

충 주 시 의 회  
제127회 1차 정례회  
2008. 6. 30 (월)

# 조례안건심사보고서

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 
및 운영 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
# 조례안건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안 건 명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	비고
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	2008. 5. 15	2008. 5. 15	2008. 5. 22 (심사보류)			126회 임시회
			2008. 6. 26	2008. 6. 26	농정 과장	127회 정례회

## 2. 제안설명요지

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설치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

## 3. 주요내용

- 산지유통센터의 기능과 위탁운영 근거를 정함(안 제4,5조)
- 위탁 범위, 방법 및 이용료를 정함(안 제6, 9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## **5. 질의답변 요지**

- ▶ 질의 : 유통센터의 이용료가 5/1000면 과다한 생각이 드는  
데 처음부터 요율을 낮춰야 함
  - 답변 : 법령에서 5/1000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원  
협과 협의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음
- 
- ▶ 질의 : 유통센터 수리보수비는
  - 답변 : 조항에 없어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함
- 
- ▶ 질의 : HACCP(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은 미리 정해둘  
필요가 있고 추가로 GAP(우수농산물)규정을 두면 되  
겠음
  - 답변 : 알겠음

## **6. 심사결과**

### **수정가결**

붙임 :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  
한 수정안 1부

##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제1항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3.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, 농수산물 유통공사

안 제7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.

안 제8조의 조제목 “이용료”를 “사용료”로 하고, 제1항 중 “정상 운영 후”를 삭제하며, “이용”을 “사용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 제1항 제3호 중 “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”를 삭제한다.

안 제11조 제2호 중 “수수료”를 “이용료”로 한다.

안 제13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운영) ①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.

②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, 농산물 수집, 출하, 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③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충주사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.

④운영주체는 충주시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취급시 시의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.

⑤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·기계화·규격화·공동선별·공동출하·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,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,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⑥운영주체는 출하농가의 과수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⑦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운전자금 확보) ①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(전년도 거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거래 예상액)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.

②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종전 제17조에서 제29조를 제15조에서 제27조까지로 한다.

안 제18조(종전 제20조)제1항 중 “10일 전까지”앞에 “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”를 삽입한다.

안 제20조(종전 제22조)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②운영주체는 품목별 영업개시일을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안 제22조(종전 제24조) 중 제4항 및 제5항를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(GAP)인증을 받아야 한다.

##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

조례제정안	수정안
<p>제6조(위탁) ①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 운영을 위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 조합</li> <li>2.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>3.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, 농수산물유통공사</p>
<p>제7조(위탁신청) ①유통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·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관</li> <li>2. 법인등기부등본</li> <li>3.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</li> <li>4.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</li> <li>5.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(산지수집능력, 취급 물량 확대 분산능력, 투자계획,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)</li> <li>6.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·운영</li> </ol>	<p>(삭제)</p> <p>4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5. (제정안과 같음)</p>



조례제정안	수정안
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4조(운영)</b>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, 농산물 수집출하 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·기계화·규격화·공동선별·공동출하·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,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,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	<p>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.</p> <p>②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, 농산물 수집, 출하, 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</p>
	<p>③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충주사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운영주체는 충주시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취급시 시의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·기계화·규격화·공동선별·공동출하·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,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,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운영주체는 출하농가의 과수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15조(운전자금 확보)</b>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(전년도 거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</p>	<p><b>제14조(운전자금 확보)</b>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(전년도 거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</p>

조례제정안	수정안
<p>간 거래 예상액)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에 따른 연간 거래 예상액)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16조(관리비의 보조) ①시장은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(삭제)</p>
<p>제20조(휴·폐업 승인 등) ①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·유통인·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8조(휴·폐업 승인 등) ①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·유통인·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<p>제22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,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,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시장은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</p>	<p>②운영주체는 품목별 영업개시일을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</p>

